

(년 귀속)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
*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(2)를,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만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(3)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<작성순서·구비서류 등>

1. 작성순서

가. ①기본사항기입

나. ⑤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명세 및 ⑥소득금액계산명세 작성

*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(4천만원)에 미달하고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⑥소득금액계산명세를 작성합니다.

다. ⑦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작성

라. ⑧이월결손금명세 작성

마. ⑨공제및감면명세 작성

바. ⑩원천납부세액명세, ⑪기납부세액명세 작성

사. ②소득세액의계산 작성 : ⑤ ~ ⑦의 작성결과를 이기

* 산출세액 (㉕)의 계산시 유의사항

-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(4천만원)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경우 : 제11면의 부표 [이자소득등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]를 통해 산출세액 계산

- 기타의 경우 : ②소득세액의계산의 과세표준(㉓)에 기본세율을 적용, 산출세액 계산

아. ③국세환급금계좌신고, ④세무대리인의 기입

자. 신고인(주된 소득자)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

2. 구비서류

가.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
나.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

3. 기타

가.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.

나. 「관리번호」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.

22226-63191일

1998. 1. 21. 승인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70g/m²)

접 수 증(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)

성명	주소		
첨 부 서 류			접 수 자
1. 대차대조표	() .	5. 소득공제신고서 ()	접수일자(인)
2.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	() .	6. 기타 첨부서류	
3. 합계잔액시산표	() .		
4. 조정계산서	() .		

*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작성요령

1. []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.
2. 종합소득금액 ㉑란에는 ㉑소득별소득금액및소득공제명세의 ㉑란을 이기합니다.
3. 소득공제 ㉒란은 ㉑소득별소득금액및소득공제명세의 ㉒란을 이기합니다.
4.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산출세액을 제11면의 [이자소득등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]를 사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5.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㉑공제및감면명세의 해당각란을 기입한 후 세액공제합계액(㉒)은 ㉒란에, 감면세액합계(㉓)는 ㉓란에 각각 이기합니다(토지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납세조합공제액은 세액공제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).
6. 가산세 ㉔란은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기입합니다(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).
7. 추가납부세액 ㉕란은 신고시 납부하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, 조세감면규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사업자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으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기입합니다.
8. 기납부세액계 ㉖란에는 ㉑기납부세액명세의 ㉖란을 이기합니다.
9.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 각란 ㉗~㉘란에 기입하되, 기납부세액계 ㉖란은 ㉑기납부세액명세의 ㉖란을 이기합니다. 다만, 과세표준금액 ㉙란은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상의 감면세액합계 ㉚란을 이기합니다.
10.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㉑국세환급금계좌신고 ㉛~㉜란에 기입합니다. 이 경우 정기성예금 및 적금은 수시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수시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11. 세무대리인이 기장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㉑란을 기재하되 ㉑성명란 및 ㉑관리번호란은 납세자의 신고 및 조정 의뢰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성명 및 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.
 다만, 합동사무소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이 신고 및 조정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합동사무소 및 법인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12.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13. 구비서류란중 기타서류 : 당해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.

세 율 표(1997년 귀속)					
과세표준금액	세율(%)	누진공제액	과세표준금액	세율(%)	누진공제액
1,000만원이하	10	0	4,000만원초과	30	500만원
1,000만원초과	20	100만원	8,000만원초과	40	1,300만원

작성요령

< 5 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명세 작성요령 >

1.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·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,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2. 작성순서 : 아래 각목의 순서에 따라 소득지급처별로 작성하되 각목별로 본인·배우자의 귀속 소득순으로 작성합니다.
 - 가. 법 제1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(소득구분코드 : 11)
 - 나. 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(소득구분코드 : 21)
 - 다.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(소득구분코드 : 22)
 - 라. 나목과 다목외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(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받는 의제배당과 법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은 제외)(소득구분코드 : 23)
 - 마. 나목 내지 라목외의 배당소득(소득구분코드 : 24)
 - 바. 가목외의 이자소득(소득구분코드 : 12)
3. 소득구분코드(100) : 해당 소득코드를 기입합니다.
4. 일련번호(102) : 「2. 작성순서」 각목의 소득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소득별 일련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소득별계를 표시합니다. (예 : 본인의 이자소득 지급발생처가 3개의 금융기관일 때에는 일련번호 각란에 1, 2, 3, 소득별계 순으로 표시)
5. 법인명(상호)(104) : 법인은 법인명,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.
6. 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(105) : 소득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)를 기입합니다.
7. 총수입금액(108) : 지급처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(같은 연도 귀속이면 월에 관계 없음).
8.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(116) :
 - 가. 「2. 작성순서」 나목 및 다목의 배당소득 - 총수입금액(108)
 - 나. 「2. 작성순서」 라목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.
 - (1) (라목의 총수입금액 108 < 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중 4천만원 초과금액)인 경우 - 라목의 총수입금액 108
 - (2) (라목의 총수입금액 108 > 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중 4천만원 초과금액)인 경우 - 초과금액
9. 배당가산율(117) :
 - 가.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(법인세부담률)/(1-법인세부담률)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(100분의 1미만은 버립니다)
 - 나. 가.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19를 기재합니다.
10. 배우자(115) : 배우자의 금융소득(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)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○표를 합니다.

작성요령

<⑥소득금액계산명세 작성요령>

1.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명세를 소득별, 소득자별, 사업장·지급처별로 각란에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*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명세는 ⑤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 명세에 따로 기입합니다.
2. 소득구분코드(⑩) : 부동산임대소득 30, 사업소득 40, 국내(갑종)근로소득 51, 미국군 근로소득 52, 국외근로소득 53, 을종근로소득 55, 일시재산소득 65, 기타소득 60중 해당 소득코드를 기입합니다.
3. 일련번호(⑪) :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소득별 일련번호가 2이상 인 경우에만 마지막에 소득별계를 표시합니다.(예 :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3개일 때에는 일련번호 각란에 1, 2, 3, 소득별계의 순으로 표시)
4. 상호 또는 법인명(⑫) :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의 상호를 기입하고,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, 기타소득의 경우 근무처·지급처의 상호를 기입합니다.
5. 신고유형코드(⑬) : 자기조정 11, 외부조정 12, 간이소득금액계산 20, 간이소득금액계산(표준소득률) 30, 비사업자 40중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.
6. 총수입금액(⑭) :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처별로 합산하여 기입합니다.(같은 연도귀속이면 월에 관계없음)
7. 필요경비(⑮) :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처별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.
8. 배우자(⑯) :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○표 합니다.

<⑦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작성요령>

1. 이자소득금액⑰ 및 배당소득금액⑱ : 아래의 가 또는 나의 방법에 의합니다.
가. 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⑤금융소득금액명세 ⑲란 「소득금액」의 소득별 합계액을 각각 이기합니다.
나. 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: ⑤금융소득금액명세 ⑲란 「소득금액」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(제4면의 「2.작성 순서」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)과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의 소득별 합계액을 기입합니다.
2. 부동산임대소득금액⑳·사업소득금액㉑·근로소득금액㉒·일시재산소득금액㉓·기타 소득금액㉔ : ⑥소득금액계산명세⑲란의 소득별 합계액을 각각 이기합니다.
3. 종합소득금액계⑳ :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㉑이 음수(-)인 경우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, 사업소득금액㉑이 음수(-)인 경우는 이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.
4. 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㉕ : ⑨공제및감면명세㉖란의 소득공제계를 이기합니다.
5. 종합소득공제 ㉗~㉙란은 별지 제37호서식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기합니다. 다만,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 특별 공제금액을 이기하며,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특별공제란을 기입함에 있어 표준 공제 ㉗란에 60만원만 기입합니다.

⑥ 소득금액계산명세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⑤에 기재)

(배우자 주민등록번호 -)

소득구분코드	⑩1					
일련번호	⑩2					
소재지	⑩3					
상호 또는 법인명	⑩4					
사업자등록번호	⑩5					
신고유형코드	⑩6					
주업종표준율코드	⑩7					
총수입금액	⑩8					
필요경비	⑩9					
이월결손금	⑪0					
소득금액	⑪2					
배우자	⑪5					

*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⑦ 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

소득별 소득금액명세			소득공제명세				
구분	금액		구분	금액			
이자소득금액	⑤1		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(②2)	⑥1			
배당소득금액	⑤2			인적공제	기본공제(명)	⑥2	
부동산임대소득금액	⑤3		종합소득	공제	추가공제(명)	⑥3	
					소수공제자추가공제	⑥4	
사업소득금액	⑤4		소득	특별공제	계	⑥5	
					보험료공제	⑥6	
근로소득금액	⑤5		공제	공제	의료비공제	⑥7	
					교육비공제	⑥8	
일시재산소득금액	⑤6		공제	공제	주택자금공제	⑥9	
					기부금공제	⑦0	
기타소득금액	⑤7		공제	공제	계	⑦1	
					표준공제	⑦2	
종합소득금액계	⑤8		공제	공제	종합소득공제계(⑥5+⑦1)또는(⑥5+⑦2)	⑦3	
					소득공제계(⑥1+⑦3)	⑦4	

⑧ 이 월 결 손 금 명 세											
㉑ 구 분	㉒ 일 련 번 호	㉓ 과세기간	㉔ 이월결손금발생액	공 제 액				㉕ 잔 액			
				㉖ 기공제액	㉗ 당기공제액	㉘ 보 전	㉙ 소 멸				
부동산 임 대 소 득 (30)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
사 업 소 득 (40)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
계											
작성요령 : 1. 부동산 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당기공제액 ^㉖ 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부동산임대소득 범위내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기입합니다. 2.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당기공제액 ^㉖ 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기입합니다.											
⑨ 공제 및 감면명세											
세 액 공 제				세 액 감 면							
㉚ 번호	㉛ 구분(명칭)	㉜ 코 드	㉝ 공 제 세 액	㉞ 번호	㉟ 구분(명칭)	㊱ 코 드	㊲ 감 면 세 액				
1				1							
2				2							
3				3							
4				4							
계(㉚=㉛)				계(㉞=㉟)							
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			준 비 금			특 별 상 각 비					
㉚ 번호	㉛ 구분(명칭)	㉜ 코 드	㉝ 금 액	㉞ 번호	㉟ 구분(명칭)	㊱ 코 드	㊲ 금 액	㊳ 번호	㊴ 구분(명칭)	㊵ 코 드	㊶ 금 액
1				1				1			
2				2				2			
3				3				3			
4				4				4			
계(㉚=㉛)				계				계			
작성요령 :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.											

⑩ 원천납부세액명세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⑤에 기재)

㉔소득귀속연월	㉕소득구분	㉖상호 또는 법인명	㉗소득금액(수입금액)	㉘소득세	㉙농어촌특별세	비고
계						

작성요령 : 1. 사업소득,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처별 합계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기입하며,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.

*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명세는 ⑤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명세에 따로 기입합니다.

2. 소득귀속연월(㉔) :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귀속연월을 기입하며 당해과세기간 중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 합계액을 기입하되 귀속연월은 마지막 연월을 기입합니다.
(예 : 1995년 6월이면 9506)

3. 소득구분(㉕) : 사업소득 40, 국내(갑종)근로소득 51, 미국군근로소득 52, 외국근로소득 53, 을종근로소득 55, 기타소득 60중 해당소득에 기입합니다.

4. 상호 또는 법인명(㉖) : 지급처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.

5. 소득금액(수입금액)(㉗) : 근로소득,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,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.

⑪ 기 납 부 세 액 명 세

구분		종 합 소 득 세	농 어 촌 특 별 세
총	간 예 납	⑧1	
토지등 매매차 익예정	신 고 납 부 세 액	⑧2	
	예 정 고 지 세 액	⑧3	
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		⑧4	
수 시 부 과		⑧5	⑩71
원 천 징 수	이 자 소 득	⑧6	⑩72
	배 당 소 득	⑧7	⑩73
	사 업 소 득	⑧8	
	근 로 소 득	⑧9	⑩74
	기 타 소 득	⑧9	
기 납 부 세 액 계		⑧9	⑩75

작성요령 : 1.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.

2. ⑧6·⑧7란 및 ⑩72·⑩73란은 ⑤금융소득금액계산명세상의 ⑩13 및 ⑩14란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액합계액을 이기하며, ⑧8~⑧9란 및 ⑩74란은 ⑩원천납부세액명세의 ㉔란의 소득세 및 ㉙란의 농어촌특별세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각각 이기합니다.

작성요령

[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] 작성요령

1. 작성란의 선택

※ 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각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

가. 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②란에 작성
나. 부부합산 이자·배당소득이 4,000만원이하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다음의 이자·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: ③란에 작성

- 비영업대금의 이익
-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
-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
-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·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

2.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으로서 분리과세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②란 또는 ③란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을 작성합니다.

3.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제5면의 ⑤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명세의 총수입금액(⑩)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기합니다.

4. ⑫, ⑳란 배당가산액은 제5면의 ⑤금융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금액계산명세의 배당가산액(⑪)을 합하여 기입합니다.

5. ⑬, ㉑란 이자소득등의 다른 종합소득은 제7면의 ⑦소득별소득금액및소득공제명세의 종합소득금액계(⑤⑧)에서 이자소득금액(⑤①)과 배당소득금액(⑤②)을 차감한 금액을 이기합니다.

6. ⑮, ㉓란의 소득공제는 제7면의 ⑦소득별소득금액및소득공제명세의 ⑦④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.

7. ⑲란 기준금액세액란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(⑩)이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금액(④)보다 큰 경우에는 4,000만원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표시하고, ④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자소득등금액(⑧)에서 ④란 소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8. ④번(㉔~㉕란)은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 장기채권이자소득을 분리과세납부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[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]

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					-									
① 이자소득등 금액 명세																				
구분		금액		구분		금액														
소제 득 ¹⁴ 조 세제 ⁴ 법항	① 비영업대금이익				⑤ 국외이자배당(원천징수분 제외)															
	② 상장및장외등록법인의대주주배당				⑥ 합계 (④+⑤)															
	③ 비상장법인 주주배당				⑦ 기타이자·배당소득															
	④ 소계				⑧ 이자소득등의 금액(⑥+⑦)															
② 이자소득등의 금액(⑧)이 종합과세기준 금액(4,0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										③ 이자소득등의 금액(⑧)이 종합과세기준 금액(4,000만원) 이하인 경우										
⑨ 종합과세기준금액		40,000,000원		⑳ 종합과세이자소득등의 금액(④)																
⑩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(⑧-⑨)				㉑ 배당가산액																
⑪ 종합과세 이자소득등의 금액 (⑩과 ④중 큰 것)				㉒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(㉓)																
⑫ 배당가산액				㉓ 종합소득금액(㉑+㉒+㉔)																
⑬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				㉔ 소득공제계 (㉕)																
⑭ 종합소득금액 (⑪+⑫+⑬)				㉕ 과세표준 (㉖-㉗)																
⑮ 소득공제계 (㉕)				㉖ 기본세율																
⑯ 과세표준 (⑭ - ⑮)				㉗ 산출세액																
⑰ 기본세율				㉘ 국외이자배당소득(⑤)×15/100																
⑱ 산출세액				㉙ 비교산출세액계 (㉚+㉛)																
⑲ 기준금액세액 : ⑨×15/100 또는 (⑧ - ④) × 15 / 100				㉚ 이자소득등 세액{(⑧+⑫)× $\frac{15}{100}$ }																
⑳ 비교산출세액계 (⑱+⑲)				㉛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과세표준 (⑬-⑮)																
㉑ 이자소득등 세액{(⑧+⑫)× $\frac{15}{100}$ }				㉜ 기본세율																
㉒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과세표준 (⑬-⑮)				㉝ 산출세액																
㉓ 기본세율				㉞ 비교산출세액계(㉙+㉚)																
㉔ 산출세액				㉟ 종합소득산출세액 (㉞과 ㉟중 큰 금액)																
㉕ 비교산출세액계(㉙+㉚)				④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이자 소득을 분리과세 납부신청한 경우																
㉖ 종합소득산출세액 (㉞과 ㉟중 큰 금액)				㊱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																
				㊲ 산출세액 {㊱×30(25)/100}																
				㊳ 종합소득산출세액 ([㉞+㊲] 또는 [㉟+㊲])																